

주요국의 우체국 밀도 현황 및 제도화 사례 분석¹⁾

한 은 영*

본고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의 우체국 밀도 현황과 변화 추이, 주요국의 우체국 밀도 기준 제도화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드러난 것은 각국이 처한 지리적, 사회문화적, 기술적 여러 상황에 따라 국가마다 상이한 수준의 우체국 수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1995년과 2015년 비교를 통해서도 지난 20년간 우체국 밀도와 관련 지표가 대부분 국가에서 정규국이 줄고 위탁국은 늘어나는 방향으로, 그리고 국당 면적과 국당 인구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흘러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우체국 설치 기준에 대한 제도화 방식도 국가마다 상이하어 법에 규정을 두거나(네덜란드, 독일, 호주, 일본 등), 정부와의 합의 또는 정부 기준에 근거하는 국가(뉴질랜드, 영국 등)가 있으며, 우리처럼 아예 명시적 규정이 없기도 한 국가(미국, 캐나다 등)가 다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우체국 설치 기준을 법령 등에 명시한 경우에는 많은 국가에서 인구와 거리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 머리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적절한 범위의 우편서비스가 전국에 걸쳐 제공됨으로써 모든 경제주체가 이러한 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우편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1년 개정된 우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하여금 전국에 걸쳐 효율적인 우편송달에 관한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어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적정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경영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 hey@kisdi.re.kr

1) 본고의 주요 내용은 정진하 외(2017), 『경쟁에 대응한 우편서비스 구조 개편과 이를 위한 법령개정 및 요금체계 정비방안 연구』를 토대로 구성됨.

한 요금으로 우편물을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우편역무(보편적 우편역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동조 제3항에 따른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서 우정사업본부장으로 하여금 우체국 및 우체통의 설치현황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정사업본부가 내부적으로 상세한 우체국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우체국을 설치·운영해오고 있다.

이와 같은 우정사업본부의 내부 기준에 따라 운영 중인 총 우체국 수는 2016년 말 기준 3,497개 국이며, 이 가운데 직영우체국이 55.7%(1,947개 국), 별정우체국이 21.3%(745개 국), 우편취급국이 23.0%(805개 국)이다. 이를 지역별로 구분해보면, 전체 우체국의 54.5%(1,905개 국)가 도시에 분포하고 있고 45.5%(1,592개 국)는 읍·면 지역에 위치한다.

〈표 1〉 2016년 12월 말 기준 우체국망 현황

(단위: 개소)

| 행정구역별 유형별 | | 서울시 | 대도시 | 일반시 | 읍면지역 | 총합계 | 점유율 |
|--------------|-----------|------------|------------|------------|--------------|--------------|--------------|
| | | 총괄국 | 24 | 70 | 67 | 86 | 247 |
| 직영 우체국 | 집배센터 | — | 7 | 12 | 231 | 250 | 7.1% |
| | 창구국 | 201 | 502 | 268 | 479 | 1,450 | 41.5% |
| | 소계 | 225 | 579 | 347 | 796 | 1,947 | 55.7% |
| | 별정우체국 | — | 27 | 13 | 705 | 745 | 21.3% |
| 우편취급국 | | 200 | 351 | 163 | 91 | 805 | 23.0% |
| 합계 | | 425 | 957 | 523 | 1,592 | 3,497 | 100% |
| 점유율(%) | | 12.1% | 27.4% | 15.0% | 45.5% | 100% | — |

자료: 우정사업본부 내부자료(2017)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는 우정사업본부의 잘 정비된 내부 기준에 따라 우체국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나라에서는 어떠한 기준과 제도 하에서 우체국이 설치·운영되고 있는지 등 그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는 것도 해외우정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는 유용한 작업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의 우체국 밀도 현황과 변화 추이, 주요

국의 우체국 밀도 기준 제도화 사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우체국 밀도는 국가의 발전정도, 국토 면적과 인구 규모, 인구 분포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으므로 국가간 비교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우체국 밀도가 국가간 비교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며, 국가간 우체국 밀도 변화 추이에 공통점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II. 주요국의 우체국 밀도 현황 및 변화 추이

1. 주요국의 우체국 접근 가능성 지표

EU 회원국 28개 국가와 OECD 국가 중 EU 회원국이 아닌 13개 국가 등 총 41개 국가 가운데 2017년 3월 현재 UPU 통계시스템에 2015년도 데이터가 등록되지 않은 7개국(벨기에, 그리스,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라트비아, 멕시코, 스페인)을 제외한 34개국의 우편서비스 접근 가능성 관련 지표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주요국의 우편서비스 접근 가능성 지표(2015년 기준)

| | 상설 우체국 | 정규 우체국 | 위탁 우체국 | 국당 면적 (km ²) | 국반경 (km) | 국당 인구 (명) | 우체통 | 우체통당 면적 (km ²) | 우체통 반경 (km) | 도시지역 근무일당 평균 배달횟수 | 농촌지역 주당 평균 배달일수 | 가정 서신배달 향유 인구비율(%) | 우편 서비스 미향유 인구비율 (%) |
|-------|-----------|-----------|-----------|-----------------------------|-------------|--------------|---------|----------------------------------|-------------------|----------------------------|-----------------------|---------------------------------|---------------------------------|
| 호주 | 4,395 | 723 | 3,672 | 1,761.4 | 23.7 | 5,454 | 15,591 | 496.5 | 12.6 | 1.0 | 5.0 | ND | ND |
| 오스트리아 | 1,785 | 504 | 1,281 | 47.0 | 3.9 | 4,787 | 15,544 | 5.4 | 1.3 | 1.0 | 5.0 | 99.0 | 0.0 |
| 불가리아 | 2,981 | 2,981 | - | 37.2 | 3.4 | 2,399 | 4,814 | 23.0 | 2.7 | 1.0 | 5.0 | ND | ND |
| 캐나다 | 21,740 | 3,730 | 18,010 | 458.6 | 12.1 | 1,653 | 234,146 | 42.6 | 3.7 | 1.0 | 5.0 | 89.0 | 0.0 |
| 칠레 | 491 | 224 | 267 | 1,541.0 | 22.2 | 36,554 | ND | ND | ND | 1.0 | 2.0 | 91.7 | 0.4 |
| 크로아티아 | 2,040 | 1,020 | 1,020 | 27.7 | 3.0 | 2,078 | 3,113 | 18.2 | 2.4 | 1.0 | 2.0 | ND | ND |
| 사이프러스 | 1,097 | 55 | 1,042 | 8.4 | 1.6 | 1,062 | 862 | 10.7 | 1.8 | 1.0 | 5.0 | 98.0 | 0.0 |
| 체코 | 3,385 | 3,195 | 190 | 23.3 | 2.7 | 3,115 | 21,698 | 3.6 | 1.1 | 1.0 | 5.0 | 100.0 | 0.0 |
| 덴마크 | 1,110 | 6 | 1,104 | 38.8 | 3.5 | 5,107 | 7,708 | 5.6 | 1.3 | 1.0 | 6.0 | 100.0 | 0.0 |
| 에스토니아 | 326 | 198 | 128 | 138.3 | 6.6 | 4,028 | 2,777 | 16.2 | 2.3 | 1.0 | 5.0 | 100.0 | 0.0 |
| 핀란드 | 905 | 87 | 818 | 373.6 | 10.9 | 6,081 | 6,522 | 51.8 | 4.1 | 1.5 | 8.5 | 100.0 | 0.0 |
| 프랑스 | 26,337 | 17,083 | 9,254 | 20.9 | 2.6 | 2,445 | 124,142 | 4.4 | 1.2 | 1.0 | 6.0 | 100.0 | 0.0 |

| | 상설 우체국 | 정규 우체국 | 위탁 우체국 | 국당 면적 (km ²) | 국반경 (km) | 국당 인구 (명) | 우체통 | 우체통당 면적 (km ²) | 우체통 반경 (km) | 도시지역 근무일당 평균 배달횟수 | 농촌지역 주당 평균 배달일수 | 가정 서신배달 향유 인구비율 (%) | 우편 서비스 미향유 인구비율 (%) |
|-------|-----------|-----------|-----------|-----------------------------|-------------|--------------|---------|----------------------------------|-------------------|----------------------------|-----------------------|---------------------------------|---------------------------------|
| 독일 | 27,600 | — | 27,600 | 12.9 | 2.0 | 2,924 | 110,000 | 3.2 | 1.0 | 1.0 | 6.0 | ND | ND |
| 영국 | 11,634 | — | 11,634 | 20.9 | 2.6 | 5,563 | 115,364 | 2.1 | 0.8 | 1.0 | 6.0 | 99.9 | 0.0 |
| 헝가리 | 2,609 | 2,282 | 327 | 35.7 | 3.4 | 3,777 | 8,770 | 10.6 | 1.8 | 1.0 | 5.0 | 100.0 | 0.0 |
| 아일랜드 | 1,135 | 51 | 1,084 | 61.9 | 4.4 | 4,130 | 5,700 | 12.3 | 2.0 | 1.0 | 5.0 | 100.0 | 0.0 |
| 이탈리아 | 13,055 | 13,048 | 7 | 23.1 | 2.7 | 4,580 | 52,000 | 5.8 | 1.4 | 1.0 | 5.0 | 99.9 | 0.0 |
| 일본 | 24,452 | 20,165 | 4,287 | 15.5 | 2.2 | 5,176 | 181,692 | 2.1 | 0.8 | 1.0 | 6.0 | 100.0 | 0.0 |
| 한국 | 3,524 | 2,610 | 914 | 28.2 | 3.0 | 14,272 | 14,920 | 6.7 | 1.5 | 1.0 | 5.0 | 100.0 | 0.0 |
| 리투아니아 | 687 | 686 | 1 | 95.1 | 5.5 | 4,189 | 1,687 | 38.7 | 3.5 | 1.0 | 5.0 | 100.0 | 0.0 |
| 룩셈부르크 | 114 | 96 | 18 | 22.7 | 2.7 | 4,974 | 1,167 | 2.2 | 0.8 | 1.0 | 5.0 | 100.0 | 0.0 |
| 말타 | 67 | 37 | 30 | 4.7 | 1.2 | 6,254 | 477 | 0.7 | 0.5 | 1.0 | 1.0 | 100.0 | 0.0 |
| 네덜란드 | 2,049 | 2 | 2,047 | 20.3 | 2.5 | 8,260 | 17,619 | 2.4 | 0.9 | 1.0 | 5.0 | 100.0 | 0.0 |
| 뉴질랜드 | 880 | 113 | 767 | 307.4 | 9.9 | 5,147 | 2,553 | 106.0 | 5.8 | — | — | 97.0 | 1.0 |
| 노르웨이 | 1,400 | 38 | 1,362 | 275.1 | 9.4 | 3,722 | 13,047 | 29.5 | 3.1 | 1.0 | 6.0 | 100.0 | 0.0 |
| 폴란드 | 7,375 | 4,659 | 2,716 | 43.8 | 3.7 | 5,236 | 22,838 | 14.2 | 2.1 | 1.0 | 5.0 | 100.0 | 0.0 |
| 포르투갈 | 2,327 | 616 | 1,711 | 39.5 | 3.5 | 4,448 | 11,965 | 7.7 | 1.6 | 1.0 | 5.0 | 100.0 | 0.0 |
| 루마니아 | 5,733 | 5,732 | 1 | 41.6 | 3.6 | 3,403 | 13,506 | 17.7 | 2.4 | 1.0 | 5.0 | 100.0 | 0.0 |
| 슬로바키아 | 1,583 | 1,540 | 43 | 31.0 | 3.1 | 3,428 | 5,570 | 8.8 | 1.7 | 1.0 | 5.0 | 99.0 | 0.0 |
| 슬로베니아 | 526 | 416 | 110 | 38.5 | 3.5 | 3,932 | 2,322 | 8.7 | 1.7 | 1.0 | 5.5 | 100.0 | 0.0 |
| 스웨덴 | 1,867 | 260 | 1,607 | 241.0 | 8.8 | 5,238 | 23,478 | 19.2 | 2.5 | 1.0 | 5.0 | 100.0 | 0.0 |
| 스위스 | 2,199 | 1,464 | 735 | 18.8 | 2.4 | 3,768 | 14,714 | 2.8 | 0.9 | 1.0 | 6.0 | 100.0 | 0.0 |
| 터키 | 4,516 | 3,450 | 1,066 | 173.5 | 7.4 | 17,419 | 1,963 | 399.2 | 11.3 | ND | ND | 97.0 | 0.0 |
| 미국 | 30,529 | 26,615 | 3,914 | 315.4 | 10.0 | 10,540 | 157,000 | 61.3 | 4.4 | 1.0 | 6.0 | 93.0 | 0.0 |

주 1) 음영 처리된 국가는 OECD 국가 가운데 EU 비회원국

2) ND: no data

자료: UPU Statistics.

적정한 우체국의 수는 각국의 지리적 특성, 인구분포, 인구밀도, 생활수준, 교통 시설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위의 표만으로 국가별로 우체국 수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국가의 우편서비스 접근 가능성 지표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어떠한 상황인지 가늠하고자 한다.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당 관할면적은 최소 4.7km²(말타)에서 최대 1,761km²(호주)에 이른다. 그리고 국당 인구는 최소 1,062명(사이프러스)에서 최대 36,554명(칠레)까지 분포되어 있다. 흥미로운 것은 국당 관할면적이 최소인 말타의 국당 인구가 6,254명인데 반해,

관할면적이 최대인 호주는 5,454명이라는 점이다.

개별 우체국의 관할 면적이 원형이라 가정할 때 국반경은 관할지역에서 가장 변두리에 있는 고객이 우체국을 이용하려 할 때 이동해야 하는 거리를 의미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3.0km로 전체 조사 국가 가운데 중간 정도에 속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당 인구는 14,272명으로 칠레와 터키 다음으로 많은 수준이다. 그러나 우체국을 방문하여 우편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고객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당 인구가 우편서비스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지니는 중요성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약화되었음에 유의하여 해당 지표를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우체통 반경은 1.5km로 조사 국가 가운데 중간 이상의 수준인데, 이것을 순위로 표시하면 34개국 중 13번째로 반경이 작다.

한편, 도시지역에 대한 근무일당 배달회수는 핀란드와 통계 데이터가 없는 두 나라(뉴질랜드, 터키)를 제외하고 1일 1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농촌지역에 대한 주당 배달 일수는 말타, 크로아티아, 칠레를 제외하고 평균 주 5회 이상으로 도시 지역에 비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 서비스 향유 인구비는 집에서 우편물을 받아보는 인구의 비율인데, 우리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100% 또는 이에 근접한 비율을 보인다. 그리고 우편서비스 미향유 인구비는 우편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인구 비율인데, 대부분의 나라에서 거의 모든 주민이 우편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 주요국의 우체국 접근 가능성 지표 변화

1) 정규국과 위탁국의 구성 변화

EU 회원국 28개 국가와 OECD 국가 중 EU 회원국이 아닌 13개 국가 등 총 41개 국가를 대상으로 우체국(정규국, 위탁국) 수의 변화 추이를 1995년, 2000년, 2015년 UPU 통계자료로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주요국의 우체국 구성 변화(1995~2015년)

| | 정규 우체국 수 | | | | 위탁국 수 | | | |
|-------|----------|--------|---------|-----------------|---------|--------|---------|-----------------|
| | 1995(A) | 2000 | 2015(B) | 증가율 =(B-A)/A | 1995(A) | 2000 | 2015(B) | 증가율 =(B-A)/A |
| 호주 | 1,132 | 902 | 723 | -36.1% | 2,822 | 2,985 | 3,672 | 30.1% |
| 오스트리아 | 2,328 | 2,497 | 504 | -78.4% | 306 | ND | 1,281 | 318.6% |
| 벨기에 | 1,635 | 1,368 | ND | | - | - | ND | |
| 불가리아 | ND | 3,210 | 2,981 | | - | - | - | |
| 캐나다 | ND | ND | 3,730 | | ND | ND | 18,010 | |
| 칠레 | 551 | 546 | 224 | -59.3% | 36 | 27 | 267 | 641.7% |
| 크로아티아 | 1,190 | 1,153 | 1,020 | -14.3% | - | - | 1,020 | |
| 사이프러스 | 51 | 52 | 55 | 7.8% | 687 | 947 | 1,042 | 51.7% |
| 체코 | 3,499 | 3,343 | 3,195 | -8.7% | 12 | 17 | 190 | 1483.3% |
| 덴마크 | 653 | 473 | 6 | -99.1% | 620 | 643 | 1,104 | 78.1% |
| 에스토니아 | 578 | 542 | 198 | -65.7% | 4 | 30 | 128 | 3100.0% |
| 핀란드 | 927 | 374 | 87 | -90.6% | 864 | 1,097 | 818 | -5.3% |
| 프랑스 | ND | 13,738 | 17,083 | | ND | 2,924 | 9,254 | |
| 독일 | 13,672 | 13,500 | - | -100.0% | 3,500 | ND | 27,600 | 688.6% |
| 영국 | 1,520 | ND | - | -100.0% | 17,894 | 16,814 | 11,634 | -35.0% |
| 그리스 | 995 | 979 | ND | | 271 | 800 | ND | |
| 헝가리 | 3,216 | 2,877 | 2,282 | -29.0% | 14 | 380 | 327 | 2235.7% |
| 아이슬란드 | 109 | ND | ND | | - | ND | ND | |
| 아일랜드 | 1,357 | 1,374 | 51 | -96.2% | 577 | 540 | 1,084 | 87.9% |
| 이스라엘 | 500 | 569 | ND | | 163 | 133 | ND | |
| 이탈리아 | 14,142 | 14,913 | 13,048 | -7.7% | - | 5 | 7 | |
| 일본 | 19,973 | 20,219 | 20,165 | 1.0% | 4,614 | 4,546 | 4,287 | -7.1% |
| 한국 | 2,790 | 2,816 | 2,610 | -6.5% | 647 | 872 | 914 | 41.3% |
| 라트비아 | 1,019 | 970 | ND | | - | - | ND | |
| 리투아니아 | 1,005 | 959 | 686 | -31.7% | 3 | 6 | 1 | -66.7% |
| 룩셈부르크 | 106 | 105 | 96 | -9.4% | - | 3 | 18 | |
| 말타 | 30 | 31 | 37 | 23.3% | 20 | 21 | 30 | 50.0% |
| 멕시코 | 2,055 | 2,011 | ND | | 5,327 | 7,946 | ND | |
| 네덜란드 | 798 | 619 | 2 | -99.7% | 1,211 | 1,663 | 2,047 | 69.0% |
| 뉴질랜드 | ND | ND | 113 | | ND | ND | 767 | |

| | 정규 우체국 수 | | | | 위탁국 수 | | | |
|-------|----------|--------|---------|-----------------|---------|-------|---------|-----------------|
| | 1995(A) | 2000 | 2015(B) | 증가율 =(B-A)/A | 1995(A) | 2000 | 2015(B) | 증가율 =(B-A)/A |
| 노르웨이 | 2,045 | 875 | 38 | -98.1% | 311 | 378 | 1,362 | 337.9% |
| 폴란드 | 7,861 | 6,726 | 4,659 | -40.7% | 155 | 1,337 | 2,716 | 1652.3% |
| 포르투갈 | 1,041 | 1,057 | 616 | -40.8% | 2,238 | 2,722 | 1,711 | -23.5% |
| 루마니아 | 5,243 | 6,625 | 5,732 | 9.3% | - | - | 1 | |
| 슬로바키아 | 1,728 | 1,721 | 1,540 | -10.9% | 3 | 1 | 43 | 1333.3% |
| 슬로베니아 | 515 | 549 | 416 | -19.2% | - | 1 | 110 | |
| 스페인 | 4,527 | 3,716 | ND | | 1,314 | - | ND | |
| 스웨덴 | 1,280 | ND | 260 | -79.7% | 465 | ND | 1,607 | 245.6% |
| 스위스 | 3,532 | 3,282 | 1,464 | -58.6% | 142 | 101 | 735 | 417.6% |
| 터키 | 4,010 | 3,490 | 3,450 | -14.0% | 27,112 | 2,115 | 1,066 | -96.1% |
| 미국 | 40,775 | 33,678 | 26,615 | -34.7% | 9,131 | 4,382 | 3,914 | -57.1% |

주: 1) 음영 부분은 1995년 대비 2015년 감소를 나타냄

2) ND: no data

3) “-”은 0을 나타냄

자료: UPU Statistics.

1995년과 2015년 비교를 통해 지난 20년간 우체국 수의 변화를 보면, 우리를 비롯한 대부분 국가에서 정규국이 줄고 위탁국은 늘어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독일과 영국에서는 정규국을 완전 철폐하였고,²⁾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에서도 정규국을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감소율 70% 이상). 한편 오스트리아, 칠레, 체코, 에스토니아, 독일, 헝가리,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웨덴, 스위스에서는 위탁국이 100% 이상 크게 늘었다.

다만 일본은 유일하게 정규국 수가 늘고(1%) 위탁국 수는 감소(-7%)하는 반대 추이를 보

2) 영국의 경우 2015년 연차보고서에서 위탁이 아닌 우체국이 일부 남아 있는 것(326개)으로 확인되는데, UPU 통계에서 정규국이 전무하게 나타나는 것은 흥미로운 부분임. 상기표에서 정규국이라 지칭한 우체국은 UPU 통계의 정의에 따르면 Number of permanent offices staffed by administration officials이고 위탁국이라 지칭한 것은 Number of permanent offices staffed by people from outside the administration임. UPU 통계에서 독일과 영국이 정규국을 ‘0’으로 보고한 것은 민영화에 따라 자국 우체국에 administration official(공무원)이 없다고 판단한데 따른 결과일 수 있음

였다. 그러나 일본에서 정규국이 1995년과 2000년 사이에 증가했다가 2000년과 2015년 사이 감소하였다는 점에서 최근에는 정규국과 위탁국 모두 감소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사이프러스, 말타, 루마니아 등 3개국에서는 정규국과 위탁국이 모두 증가한 반면 핀란드, 영국, 리투아니아, 포르투갈, 터키, 미국 등 6개국에서는 정규국과 위탁국이 모두 감소한 것이 눈에 띈다.

2) 접근 가능성 지표 변화

EU 회원국 28개 국가와 OECD 국가 중 EU 회원국이 아닌 13개 국가 등 총 41개 국가를 대상으로 우체국 관련 지표 변화 추이를 1995년, 2000년, 2015년 UPU 통계자료로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표 4> 주요국의 우체국 관련 지표 변화 추이(1995~2015년)

| | 국당 면적(km ²) | | | | 국당 인구(단위: 명) | | | | 우체통당 면적(km ²) | | | |
|-------|-------------------------|-------|----------|---------------|--------------|--------|----------|---------------|---------------------------|------|----------|---------------|
| | 1995 (A) | 2000 | 2015 (B) | 증가율 = (B-A)/A | 1995 (A) | 2000 | 2015 (B) | 증가율 = (B-A)/A | 1995 (A) | 2000 | 2015 (B) | 증가율 = (B-A)/A |
| 호주 | 1,958 | 1,992 | 1,761 | -10.0% | 4,571 | 4,924 | 5,454 | 19.3% | 593 | 506 | 497 | -16.3% |
| 오스트리아 | 32 | 34 | 47 | 47.6% | 3,055 | 3,248 | 4,787 | 56.7% | 4 | 4 | 5 | 53.5% |
| 벨기에 | 19 | 22 | ND | | 6,168 | 7,451 | ND | | 2 | 2 | ND | |
| 불가리아 | ND | 35 | 37 | | ND | 2,493 | 2,399 | | 15 | 19 | 23 | 57.1% |
| 캐나다 | ND | ND | 459 | | ND | ND | 1,653 | | ND | ND | 43 | |
| 칠레 | 1,289 | 1,320 | 1,541 | 19.6% | 24,523 | 26,897 | 36,554 | 49.1% | 421 | 498 | ND | |
| 크로아티아 | 48 | 49 | 28 | -41.7% | 3,924 | 3,908 | 2,078 | -47.0% | 11 | 11 | 18 | 58.2% |
| 사이프러스 | 13 | 9 | 8 | -32.7% | 991 | 787 | 1,062 | 7.2% | 11 | 20 | 11 | -3.2% |
| 체코 | 22 | 23 | 23 | 3.7% | 2,936 | 3,042 | 3,115 | 6.1% | 3 | 3 | 4 | 16.8% |
| 덴마크 | 34 | 39 | 39 | 14.7% | 4,107 | 4,780 | 5,107 | 24.4% | 4 | 4 | 6 | 31.3% |
| 에스토니아 | 77 | 79 | 138 | 78.5% | 2,471 | 2,395 | 4,028 | 63.0% | 12 | 13 | 16 | 36.4% |
| 핀란드 | 189 | 230 | 374 | 97.9% | 2,852 | 3,519 | 6,081 | 113.2% | 24 | 43 | 52 | 116.2% |
| 프랑스 | ND | 33 | 21 | | | 3,552 | 2,445 | | 4 | 4 | 4 | 10.2% |
| 독일 | 21 | 26 | 13 | -37.8% | 4,755 | 6,097 | 2,924 | -38.5% | 3 | 3 | 3 | 27.3% |
| 영국 | 13 | ND | 21 | 66.9% | 2,986 | ND | 5,563 | 86.3% | 2 | 2 | 2 | -2.9% |
| 그리스 | 104 | 74 | ND | | 8,417 | 6,169 | ND | | 10 | 10 | ND | |
| 헝가리 | 29 | 29 | 36 | 23.8% | 3,198 | 3,136 | 3,777 | 18.1% | 5 | 6 | 11 | 104.9% |
| 아이슬란드 | 945 | ND | ND | | 2 | ND | ND | | 364 | ND | ND | |
| 아일랜드 | 36 | 37 | 62 | 70.4% | 1,866 | 1,987 | 4,130 | 121.3% | 15 | 11 | 12 | -19.8% |
| 이스라엘 | 33 | 32 | ND | | 8,106 | 8,667 | ND | | 7 | 6 | ND | |
| 이탈리아 | 21 | 20 | 23 | 8.3% | 4,052 | 3,867 | 4,580 | 13.0% | 4 | 4 | 6 | 38.0% |

| | 국당 면적(km ²) | | | | 국당 인구(단위: 명) | | | | 우체통당 면적(km ²) | | | |
|-------|-------------------------|------|-------------|-----------------|--------------|--------|-------------|-----------------|---------------------------|------|-------------|-----------------|
| | 1995 (A) | 2000 | 2015 (B) | 증가율 =(B-A)/A | 1995 (A) | 2000 | 2015 (B) | 증가율 =(B-A)/A | 1995 (A) | 2000 | 2015 (B) | 증가율 =(B-A)/A |
| 일본 | 15 | 15 | 15 | 0.6% | 5,103 | 5,130 | 5,176 | 1.4% | 2 | 2 | 2 | -8.6% |
| 한국 | 29 | 27 | 28 | -2.5% | 13,095 | 12,684 | 14,272 | 9.0% | 2 | 3 | 7 | 202.7% |
| 라트비아 | 63 | 67 | ND | | 2,444 | 2,453 | ND | | 23 | 26 | ND | |
| 리투아니아 | 65 | 68 | 95 | 46.7% | 3,601 | 3,630 | 4,189 | 16.3% | 12 | 15 | 39 | 233.4% |
| 룩셈부르크 | 24 | 24 | 23 | -7.0% | 3,849 | 4,046 | 4,974 | 29.2% | 2 | 2 | 2 | -0.8% |
| 말타 | 6 | 6 | 5 | -25.4% | 7,560 | 7,481 | 6,254 | -17.3% | 1 | 1 | 1 | 14.5% |
| 멕시코 | 265 | 197 | ND | | 12,439 | 10,017 | ND | | 78 | 90 | ND | |
| 네덜란드 | 21 | 18 | 20 | -2.0% | 7,695 | 6,978 | 8,260 | 7.3% | 2 | 2 | 2 | 7.1% |
| 뉴질랜드 | ND | ND | 307 | | ND | ND | 5,147 | | ND | ND | 106 | |
| 노르웨이 | 163 | 307 | 275 | 68.3% | 1,850 | 3,583 | 3,722 | 101.2% | 13 | 16 | 30 | 129.9% |
| 폴란드 | 40 | 40 | 44 | 8.7% | 4,815 | 4,767 | 5,236 | 8.7% | 6 | 6 | 14 | 139.9% |
| 포르투갈 | 28 | 24 | 40 | 40.9% | 3,059 | 2,706 | 4,448 | 45.4% | 5 | 5 | 8 | 51.6% |
| 루마니아 | 45 | 36 | 42 | -8.5% | 4,326 | 3,342 | 3,403 | -21.3% | 14 | 20 | 18 | 29.8% |
| 슬로바키아 | 28 | 28 | 31 | 9.3% | 3,099 | 3,129 | 3,428 | 10.6% | 6 | 7 | 9 | 40.0% |
| 슬로베니아 | 39 | 37 | 39 | -2.1% | 3,814 | 3,607 | 3,932 | 3.1% | 7 | 7 | 9 | 26.2% |
| 스페인 | 87 | 136 | ND | | 6,743 | 10,826 | ND | | 15 | 13 | ND | |
| 스웨덴 | 258 | ND | 241 | -6.5% | 5,058 | ND | 5,238 | 3.5% | 12 | ND | 19 | 56.3% |
| 스위스 | 11 | 12 | 19 | 67.1% | 1,941 | 2,147 | 3,768 | 94.1% | 2 | ND | 3 | 48.5% |
| 터키 | 25 | 140 | 174 | 589.1% | 2,016 | 12,160 | 17,419 | 764.1% | 20 | ND | 399 | 1881.5% |
| 미국 | 193 | 253 | 315 | 63.5% | 5,415 | 7,484 | 10,540 | 94.6% | 29 | 26 | 61 | 114.0% |

주: 1) 음영 부분은 1995년 대비 2015년 감소를 나타냄

2) ND: no data

자료: UPU Statistics.

1995년과 2015년 데이터를 통해 20년간 우체국의 국당 면적, 국당 인구, 우체통당 면적의 변화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증가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국당 면적을 살펴보면, 터키(589%), 핀란드(98%), 에스토니아(79%), 아일랜드(70%)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관찰 면적이 줄어든 국가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호주,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독일, 룩셈부르크, 말타, 네덜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등 11개국이다.

두 번째로 국당 인구를 보면, 크로아티아, 독일, 말타, 루마니아 등 4개 국가에서만 국당 인구가 감소하였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늘어났다. 특히 터키(764%), 아일랜드(121%), 핀란드(113%), 노르웨이(101%), 미국(95%), 스위스(94%)에서 증가 폭이 컸다.

마지막으로 우체통당 면적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우체통당 면적이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호주, 사이프러스, 영국, 아일랜드, 일본, 룩셈부르크 등 6개국의 우체통당

면적이 감소하였다. 우리나라는 우체통당 면적이 1995년 2km²에서 2015년 7km²으로 크게 증가하여 터키, 리투아니아 다음으로 증가폭이 컸다.

이상의 내용(주요국의 접근 가능성 지표 및 지표 변화)을 종합해보면, 우리나라의 국반경은 전체 조사 대상 국가(41개국) 가운데 중간 정도이나 국당 인구는 세 번째로 많고, 1995년과 2015년 사이에 국당 면적은 소폭 감소(-2.5%)하였지만 국당 인구는 증가(9%)한 것으로 요약된다. 재차 언급하지만 어느 정도의 국당 인구나 국당 면적이 적정한지, 즉 어느 정도의 우체국 수를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지는 각국이 처한 지리적 환경, 인구의 분포와 밀도, 교통 시설, 우편에 대한 수요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상의 지표만으로 특정 국가의 우체국 수에 대해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Ⅲ. 주요국의 우체국 밀도 기준 제도화 사례 분석

우리는 우체국 밀도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고 우정사업본부의 상세한 내부 기준에 의해 우체국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의 상황은 어떠한지 살펴보기 위해 정진하 외(2010), 『보편적 우편서비스 유지비용 추정 및 제도 정비방안』과 ERGP(2016)의 보고서³⁾를 참조하여 주요국의 우체국 밀도 기준 제도화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때 ‘우체국 밀도 기준 제도화’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우체국 설치 기준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는가를 말한다. 우체국 밀도와 관해서는 ① 법령으로 규정한 국가, ② 정부와의 합의 또는 정부 기준에 근거하는 국가, ③ 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국가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법령으로 규정한 나라로는 네덜란드, 독일, 호주, 일본 등이 있고, 정부와의 합의 또는 정부 기준에 근거하는 나라로는 뉴질랜드와 영국 등이 있으며, 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나라로는 미국, 캐나다 등이 있다.

3) ERGP(2016). ERGP Report on the outcome of the ERGP public consultation on the evolution of the Universal Service Obligation.

1. 법령에 근거하는 국가

1) 네덜란드

네덜란드⁴⁾는 우편시행령(BARP)⁵⁾에 우체국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 시행령 따르면, 모든 보편적서비스를 제공하는 곳과 부분적인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곳으로 구분되는 우편창구(postal outlet)는 최소 2,000개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모든 보편적서비스를 제공하는 창구는 902개가 되어야 한다.

BARP는 이에 더하여 모든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편창구의 설치 기준으로 전 인구의 95%가 5km 이내에 우편창구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5,000명 이상의 주거지역에서는 최소 주민의 85%가 5km 이내에서 우편창구에 접근 가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BARP는 50,000명 이상의 도시지역에서 50,000명당 최소 1개의 창구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민이 160,000명인 지역은 최소 3개의 우편창구가 있어야 한다.

2) 독일⁶⁾

독일의 우체국 설치는 “1999년 보편적 우편서비스 시행령(Universal Postal Service Ordinance)”⁷⁾에 의거하며, 이에 따라 최소한 12,000개의 우편창구(outlet)를 운영해야 한다. 또한 주민 2,000명 이상 모든 마을(town)에 최소 1개 우체국을 설치하고, 주민이 4,000명 이상 마을에서는 모든 발송인이 2km 이내에 우체국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농촌지역에서는 80km²당 최소 1개 우체국을 설치해야 한다.

3) 호주⁸⁾

호주의 우체국 설치 기준은 “Australian Postal Corporation(Performance Standards)

4) 정진하 외(2010), pp.36~37.

5) BARP는 네덜란드어 Besluit Algemene Richtlijnen Post(General Postal Guideline Decree)의 두문자임. 이 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http://wetten.overheid.nl/BWBR0004452/2006-01-22>를 참조할 수 있음.

6) 정진하 외(2010), p.41.

7) 이 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http://germanlawarchive.iuscomp.org/?p=720>를 참조할 수 있음

8) 정진하 외(2010), p.53.

Regulations 1998(이하 APCR 1998)⁹⁾의 제3장 제9조(retail outlets)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호주우정(Australia Post)은 최소 4,000개의 우편창구(retail outlet)를 운영해야 한다. 이 가운데 2,500개 이상의 우편창구는 농촌 또는 격·오지로 분류되는 지역에 위치해야 하며, 대도시 지역에서는 최소 90% 주민이 2.5km 이내에서 우편창구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서는 최소 85%의 주민이 7.5km 이내에서 우편창구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4) 일본¹⁰⁾

“일본우편주식회사법”¹¹⁾ 제6조에서는 널리 전국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우체국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숫자나 설치 기준을 따로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동법 시행규칙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규칙¹²⁾ 제4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시읍면(市町村)에 1개 이상의 우체국을 설치하여야 하고,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여 지역주민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과소지에 있어서는 민영화법 시행 당시의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2. 정부와의 합의 또는 정부 기준에 근거하는 국가

1) 뉴질랜드¹³⁾

뉴질랜드에서 우체국 설치에 정부와 뉴질랜드우정(NZ Post)이 체결한 양해증서(Deed of Understanding¹⁴⁾, 이하 Deed)에 의거한다. NZ Post는 최소 880개 우편창구(postal counter)

9) 이 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http://www.austlii.edu.au/au/legis/cth/consol_reg/apcsr1998640/를 참조할 수 있음

10) 일본우편주식회사법 및 동법 시행규칙

11) 이 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http://law.e-gov.go.jp/htmldata/H17/H17HO100.html>를 참조할 수 있음

12) 이 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http://law.e-gov.go.jp/htmldata/H19/H19F11001000037.html>를 참조할 수 있음

13) 정진하 외(2010), p.38.

14) 1998년 체결된 Deed of Understanding(Principal Deed)은 1998 Postal Services Act 제정시 합의된 것으로 형식상 정부와 NZ Post 간 자발적 동의에 따른 계약의 성격을 지님. 2010년에는 Principal Deed에

를 유지하는 데 동의하였고, 우편창구 가운데 최소 240개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postal outlet이고, 나머지는 부분적인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post center이다.¹⁵⁾ 그런데 postal outlet은 NZ Post가 운영할 수도 있고, NZ Post와 협정을 체결한 자가 운영할 수도 있다.

2) 영국¹⁶⁾

영국에서 우체국 네트워크를 소유·운영하는 Post Office¹⁷⁾는 정부(기업혁신부, DBIS)가 제시한 액세스 기준(Access Criteria)을 충족시켜야 한다. 정부의 액세스 기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99%의 인구가 3마일(4.8km) 이내에서, 90%의 인구가 1마일(1.6km) 이내에서 우체국(post office outlet)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도시 주민의 95%는 1마일 이내에서, 농촌 주민의 95%는 3마일 이내에서 우체국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NZ Post의 배달 의무가 면제되는 날에 관한 조항을 추가한 Deed of Variation이 체결되었고, 2013년에는 Principal Deed를 상당 부분 개정하여 전문을 다시 작성한 'Deed of Amendment and Restatement'를 체결함

Deed의 상세 내용은 <https://www.nzpost.co.nz/about-us/postal-legislation/deed-of-understanding>를 참조할 수 있음

15) post center와 post outlet은 다음과 같이 정의됨

- post center: NZ Post와의 합의에 따라 창구를 통해 고객에게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울렛으로 우표 구매 및 우편물 우송료 지불 서비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음(an outlet that offers over the counter postal services to the public,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purchase of stamps and the postage of postal articles, pursuant to an agreement with New Zealand Post)
- postal outlet: post center 외에도 대행사나 기타 서비스 회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울렛(an outlet that offers the services offered by a post centre, plus agency and/or other services)

16)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기업혁신부, 2010). Securing the Post Office Network in the Digital Age, November 2010, p.18. (http://www.nfsp.org.uk/write/MediaUploads/Government%20reports/BIS_securing-the-post-office-network-in-digital-age.pdf);

House of Commons Library(2016). Post Office Numbers, 15 November 2016, pp.4~5. (<http://researchbriefings.files.parliament.uk/documents/SN02585/SN02585.pdf>).

17) 2012년 4월 1일 Royal Mail Group Ltd에서 분리됨. 분리 이후 지주회사인 Postal Services Holding Company를 통해 기업혁신부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

3. 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국가

1) 미국¹⁸⁾

미국에서 우편서비스 접근점의 밀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다만 미국법전 39편(US Code Title 39) §403(b)(3)을 통해 USPS로 하여금 “우편업무의 합리적 경제성에 합당한 한도에서 전국에 걸친 우편 고객들이 필수적인 우편서비스에 신속한 접근성을 가질 수 있는 우편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법전 39편 §101(b)는 “어떤 작은 우체국도 단지 적자만을 이유로 폐쇄될 수 없으며 이는 도시와 지방 공동체 주민들 모두에게 효과적인 우편서비스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회의 명확한 의도를 나타낸다”고 규정하고 있다. 1985년 이후 연례 USPS 예산배당법은 매년 “이 법에 의해 제공된 예산 중 어떤 부분도 현 회계연도 중에 지방 또는 여타지역의 소규모 우체국을 합병하거나 폐쇄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유지함으로써 우체국의 폐쇄나 합병을 결정하는 데 있어 USPS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2) 캐나다¹⁹⁾

캐나다에서도 우체국 밀도와 관련한 명시적 법적 근거는 없다. 단지 1998년에 승인된 캐나다 우정(Canada Post)에 대한 ‘Policy Framework’²⁰⁾는 농촌지역 창구 서비스 기준(rural retail service standard)에 대해 “Canada Post는 지역사회의 요구를 잘 반영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협상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3) 기타 국가²¹⁾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스위스, 스페인, 키프로스, 룩셈부르크, 스웨덴 등 유럽 국가와 싱가포르에서도 우체국 밀도와 관련한 명시적 규정이 법령에 없다. 즉, 보편적 우편서비스 사업자에게

18) 정진하 외(2010), p.45.

19) 정진하 외(2010), pp.51-52.

20) Framework는 Canada Post와 몇몇 정부부처의 공무원이 합동으로 준비하였으나 이에 관한 법적 규정은 불분명하다. -정진하 외(2010), p.51.

21) ERGP(2016), p.12.

법적으로 최소 우체국 수를 요구하지 않는다. 일례로, 스웨덴 우편서비스 법은 “우편시설의 밀도는 사용자의 요구를 고려하여야 한다”고만 명시하고 있다.

〈표 5〉 해외 국가들의 우체국 설치 근거 및 기준

| | 국가명 | 근거 | 내용 | 기준 |
|---------------------------|------------------------------|----------------|--|--------|
| 법령에 근거하는 국가 | 네덜란드 | 우편시행령 (BAR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2,000개 유지(95%가 5km내 거주) • 거주민 5,000명 이상 지역에 반경 5km내 1개 우체국 설치 • 거주민이 50,000명을 초과하면 50,000명 당 추가로 우체국 설치 | 인구, 거리 |
| | 독일 | 보편적우편 서비스 시행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12,000개 유지 • 2,000명 이상 거주지역에서는 최소 1국 이상, 4,000명 이상 거주지역에서는 2km 이내 접근 • 농촌은 80km² 당 최소 1개 | 인구, 거리 |
| | 호주 | APCR 199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체국 4,000개 유지, 이 가운데 2,500개는 농촌지역 • 대도시는 90%이상이 2.5km 내 거주, 농촌은 85% 이상이 7.5km 내 거주 | 인구, 거리 |
| | 일본 | 일본우편주식회사법 시행규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읍면 단위에서 1개 이상의 우체국 설치 | 행정구역 |
| 정부와의 합의 또는 정부 기준에 근거하는 국가 | 뉴질랜드 | 양해증서 (Deed)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880개 유지 • 이 가운데 240개는 모든 서비스, 640개는 부분 서비스 제공 | - |
| | 영국 | 정부가 제시한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인구의 99%는 3마일(4.8km) 이내, 90%는 1마일(1.6km) 이내 • 도시인구의 95%는 1마일 이내, 농촌인구의 95%는 3마일 이내 | 인구, 거리 |
| 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국가 | 미국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자만을 이유로 폐쇄 금지 | - |
| | 캐나다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지역에서는 지역사회와의 협상이 요구됨 | - |
| | 아일랜드, 스위스, 스페인, 룩셈부르크, 스웨덴 등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편적 우편서비스 사업자에게 최소 우체국 수를 요구하지 않음 | - |

4. EU지침(2008/06/EC)에서의 우체국 수에 대한 최소 기준²²⁾

EU지침 3.2조는 “EU 회원국은 사용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접촉점(points of contact) 및 접속점(access points)의 밀도를 보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적절한 우체국 수를 규정하기 위해 유럽 국가들이 적용하는 일반적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일정 수의 주민당 하나의 우체국(이 수치는 지역의 크기에 따라, 그리고 도농 지역 간에 다름)
- 가장 가까운 우체국까지 이동해야 하는 최대 거리
- 보편적 우편서비스나 전 범위의 우편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소 우체국의 수
- 우체국으로부터 일정 거리에 있는 인구의 비율

IV. 맺음말

주요국 사례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국반경은 3.0km로 전체 조사 국가 가운데 중간 정도이고, 국당 인구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수준이다. 그리고 1995년과 2015년 비교를 통해 드러난 우체국 관련 지표 변화의 요지는 대부분 국가에서 정규국이 줄고 위탁국은 늘어났다는 점, 그리고 국당 면적과 국당 인구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늘어났다는 점이다. 즉, 전반적으로 정규우체국을 포함한 총 우체국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위탁우체국 수는 늘어나는 것이 국제적 트렌드라 볼 수 있다.

우체국 설치 기준에 대한 제도화 방식 역시 국가마다 상이하여 법에 규정을 두거나, 정부와의 합의 또는 정부 기준에 근거하거나, 아예 명시적 규정이 없기도 하다. 특히 우체국 설치 기준과 관련하여 미국,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 법령에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현존하는 우체국을 함부로 폐쇄

22) ERGP(2016), p.12.

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캐나다의 경우에는 농촌지역에서는 지역사회와의 협상을 요구하는 등 최소한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과 캐나다는 구체적인 우체국 설치 기준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최소한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치를 둬으로써 현행 방식을 보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우체국 설치 기준을 법령 등에 명시한 경우에는 다수 국가에서 인구와 거리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두 기준이 가장 보편화된 우체국 설치 기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인구와 거리 기준은 해당 국가의 인구밀도, 국토면적, 우편서비스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산출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기준 외에 네덜란드, 독일, 호주에서는 전국에 걸쳐 유지되어야 할 최소 우체국 수도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만은 시읍면 단위에서 1개 이상의 우체국을 설치하라는 행정구역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EU 회원국의 경우에는 EU지침(2008/06/EC)이 자국 내 우체국 설치에 있어 가이드라인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지침에서는 인구 수와 인구 비율, 거리, 최소 우체국의 수를 일반적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해외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우체국 밀도 수준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그리고 주요국의 우체국 밀도 기준과 제도화에 나타난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는 단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의 우편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어느 정도의 우체국 밀도가 적정한지 그리고 어떠한 제도화 방법이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둔다. 그것은 각국이 처한 지리적, 사회문화적, 기술적, 역사적 여러 상황에 따라 우체국의 밀도와 이에 관한 제도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우정사업본부 내부자료(2017), 우체국망 설치 현황 및 설치기준, 2017. 3. 31.

정진하·최중범·이영종(2010), 『보편적 우편서비스 유지비용 추정 및 제도 정비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책연구 10-45.

정진하·최중범·한은영·이영종(2017), 『경쟁에 대응한 우편서비스 구조 개편과 이를 위한 법령개정 및 요금체계 정비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7. 12.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2010). Securing the Post Office Network in the Digital Age, November 2010.(http://www.nfsp.org.uk/write/MediaUploads/Government%20reports/BIS_securing-the-post-office-network-in-digital-age.pdf)

ERGP(2016). ERGP Report on the outcome of the ERGP public consultation on the evolution of the Universal Service Obligation.

House of Commons Library(2016). Post Office Numbers, 15 November 2016.(<http://researchbriefings.files.parliament.uk/documents/SN02585/SN02585.pdf>).

<http://germanlawarchive.iuscomp.org/?p=720>

<http://law.e-gov.go.jp/htmldata/H17/H17HO100.html>

<http://law.e-gov.go.jp/htmldata/H19/H19F11001000037.html>

<http://wetten.overheid.nl/BWBR0004452/2006-01-22>

http://www.austlii.edu.au/au/legis/cth/consol_reg/apcsr1998640/

<https://www.nzpost.co.nz/about-us/postal-legislation/deed-of-understanding>

UPU Statistics.